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838,034,290	55,141,029
일반회계		1,615,321,795	48,459,654
특별회계		222,712,495	6,681,375
	공기업특별회계	101,700,916	3,051,02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2,569,563	1,277,08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9,131,353	1,773,941
	기타특별회계	121,011,579	3,630,347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7,679,751	230,39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466,525	163,996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2,532,948	2,175,988
	주택사업특별회계	41,959	1,25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29,973	18,899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23,994,114	719,823
	주차장특별회계	10,619,768	318,593
	마리나항만개발사업특별회계	668	20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45,873	1,37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269,14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88,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